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술림 운영세칙

제정 2011. 2. 10.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술림(이하“학술림”이라 한다)의 전반적인 운영 및 학술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의 범위)** ① 학술림 내 모든 인적·물적 자원(이하 “학술림 자원”이라 한다)의 이용은 서울대학교 교직원 혹은 학생들이 수행하는 교육 및 연구활동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② 학술림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학외 인사나 학외 단체도 학술림 자원의 이용이 가능하다.

**제3조(교육목적 이용 신청 및 책임의 소재)** ① 실험실습을 위한 학술림 자원의 신청은 담당교수 혹은 교육담당 책임자(이하 “교육책임자”라 한다)가 해야 하며, 서울대학교 학내 교과과정의 경우에는 사용일 기준 21일 전까지, 그리고 학외 교과과정의 경우에는 사용일 기준 30일 전까지 서식 제1호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술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책임자는 학술림 자원을 이용하는 동안 안전사고나 학술림 자원의 파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을 지도·교육할 책임이 있고, 학술림 자원의 파괴나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학술림장은 교육책임자에게 실비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연구목적 이용 신청 및 책임의 소재)** ① 연구를 목적으로 학술림 자원을 이용하려는 경우 연구책임자가 실험계획서를 첨부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학술림 자원의 면적 및 위치가 표시된 서식 제2호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술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학술림 자원의 이용신청에 따른 이용 목적이나 연구활동의 범위 내에서 학술림을 이용하여야 하며, 만약 이용 목적이나 연구활동의 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학술림장과 별도의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대상지에 대한 조립벌채 등의 산림시업을 하거나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 위치·크기·면적·기간·복구방안 등에 관하여 학술림장과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학술림 자원을 이용함에 있어 학술림의 관리목적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연구대상지를 장기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규격과 양식에 따른 연구안내용 입간판을 제작하여 연구대상지 입구에 설치해야 한다.

1) 입간판에는 연구제목, 책임자, 연구목적, 면적, 연구기간, 연락처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입간판은 가로 120cm × 세로 90cm의 목재 또는 철구조물 크기에 맞춰서 제작하여야 한다.

⑤ 학술림 자원의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 연구책임자에게는 연구시설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책임이 있다. 단, 학술림장이 학술림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시설은 학술림에 존치할 수 있다.

⑥ 학술림으로부터의 연구 지원 혹은 연구대상지 원상복구 등에 따른 부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학술림장은 이에 따른 실비를 연구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⑦ 연구책임자는 학술림 외의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용역과제인 경우 학술림 자원의 사용에 따른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학술림장은 매년 사용료 기준을 책정한다. 단, 연구결과 등을 학술림과 공유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⑧ 연구책임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학술림 내에 조성하거나 생산되는 수목, 목재, 기타 임산물 등을 본래의 연구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산물의 소유권은 학술림에 있다.

⑨ 학술림장이 학술림의 장기적 학술목표를 위한 유의미한 자료인 경우 원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자료를 학술림의 Database에 영구보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단, 학술림장은 연구자료가 제출된 후 연구책임자의 동의가 없는 한 3년 동안 어떤 목적으로도 별도 활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⑩ 학술림장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책임자의 사용권을 제한하거나 학술림 자원의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학술림의 운영 및 자원 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경우
2. 허가받은 사용 범위와 조건을 위반할 때
3. 기타 국유재산 관계법령 또는 학술림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연구대상지의 입간판이나 시설물 관리 등이 부실할 때

⑪ 연구책임자는 학술림 자원의 사용기간 만료되는 경우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결과 보고서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학술림 시설물의 이용)** 학술림 시설물(숙소 및 강의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학술림 시설물 이용세칙에 따라 이용방법과 사용료를 규정한다.

**제6조(학술림 자료의 이용)** 학술림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서식 4에 의해 학술림 자료이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학술림장은 학술림 운영에 필요한 경우 대여 혹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연구관리 비용)** 학술림에서 수행하는 제반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되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인건비, 재료비, 기타 소모성 비용 등)은 교육 혹은 연구책임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위반에 대한 조치)** 학술림장은 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학술림 자원의 이용이나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기 승인된 사용권한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9조(기타)** 이 세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술림장이 운영위원회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부칙(제117호, 2011.2.10.)

이 세칙은 2011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교육용 학술림 이용 신청서

학 령	부	학

교육책임자	소속 기관			
	직 위		성 명	
이용 기간				
교과목/ 교육과정				
실험/ 실습 개요				
지원요청 사항				
연락처	전 화		이메일	

학술림 운영체제를 준수할 것을 시약합니다.

20 . . . . .

신청자 :

(인)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호

[지정서]

## 연구용 학술림 이용 신청서

학  명	학  부	학  과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직  위		성  명	
이용 기간				
연구 과제명 (용역과제명)				
연구지원기관				
연구대상지 GPS좌표		연구대상지 면적		
연구개요				
측정 내용				
연락처	전  화		이메일	

20 . . . . .

신청자 :

(인)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호수림장 귀하

[서식 3]

## 연구결과 보고서

학 명	부	학술관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직 위		성 명	
연구 기간				
연구 과제명 (용역과제명)				
학술립 이용내역				
학술립 영구관리를 위한 자료명				
기 타				

\* 문헌 : 연구 데이터(raw data) 차분

위와 같이 학술립에 연구 결과를 보고합니다.

20 . . . . .

연구자 :

(인)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술립장 귀하



